〈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로고	정보공	골개서	홈페이지 주소
	등록번호	20211098	
i.M	최초 등록일	2021. 04. 23.	www.imforyou.co.kr/
	최종 등록일	2024. 03. 11.	

[아이엠택시(i.M Taxi)]

정 보 공 개 서

[㈜진모빌리티]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진모빌리티]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41, 2층 201호(성수동1가)]

가맹본부 대표전화번호 [02-6925-6295]

가맹본부 대표팩스번호 [02-441-4408]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팀 [02-6925-6295]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 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 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 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 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 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진모빌리티'의 '아이엠택시(i.M Taxi)')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 하는 자

·귀하:당사와 '아이엠택시(i.M Taxi)'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아이엠택시(i.M Taxi) 외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41, 2층 201호(성수동1가)				41, 2층
㈜진모빌리티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지	다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	호	대표팩스번호
付むエヨリリ	2020. 05. 19.	2020.	05. 19.	조창진 이성욱	02-6925-6	295	02-441-4408
	법인등록번호 1	34511-	0457794	사업자	등록번호	28	80-88-0210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서울특별	시 성동구 서울숲	길 41, 2층	
	㈜진모빌리티/	아이엠택시(i.M		201호(성수동1기	 	
대표이사	조창진	Taxi)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창진·이성욱	02-6925-6295	02-441-4408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서울특별	시 성동구 서울숲	길 41, 2층	
CII II O	㈜진모빌리티/	아이엠택시(i.M		201호(성수동1기	' })	
대표이사	이성욱	Taxi)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창진·이성욱	02-6925-6295	02-441-4408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사내이사	㈜진모빌리티/	아이엠택시(i.M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41, 2층			

			201호(성수동1가)			
	홍석표	Taxi)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창진·이성욱	02-6925-6295	02-441-4408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41, 2층			
기타상무	㈜진모빌리티/	아이엠택시(i.M	201호(성수동1가)			
이사	이윤수	Taxi)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창진·이성욱	02-6925-6295	02-441-440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사항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아이엠택시(i.M Taxi)]이라고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칭	아이엠택시(i.M Taxi)	-			
상 호	아이엠택시(i.M Taxi) []호	-			
상표(서비스표)	i.M	-			
광고	_	_			
그 밖의 영업표지	-	_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58,308,552	45,498,204	12,810,348	5,658,076	-13,836,769	-14,270,620		
2022	77,381,111	65,799,390	11,581,721	13,050,750	-13,630,198	-17,715,093		
2023	85,795,627	84,747,878	1,047,749	17,890,506	-4,229,887	-11,033,970		
	☞[별첨 1] 참조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2507	010	2 77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조창진	대표이사	2020. 05. 19. ~ 현재	㈜진모빌리티 대표이사	경영 총괄			
관련임원	700	чтотл	2020: 03: 10: EXI	(1)근모일하다 대표에서	00 02			
가맹사업	이성욱	대표이사	2020. 07. 28. ~ 현재	㈜진모빌리티 대표이사	경영 총괄			
관련임원	407	чтотл	2020: 07: 20: EXI	(1)근모일하다 대표에서	00 02			
가맹사업	이문자	사내이사	2020. 05. 19. ~ 현재	㈜진모빌리티 이사	관리			
관련임원		711 411 01711	2020. 03. 13. 근제	(1/근모글리디 에게	<u> </u>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작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3	0	4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했던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관계/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가맹사업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20201360	2021. 04. 29.	아이엠(i.M)이라는 택시서비스
㈜진모빌리티	아이엠(i.M)	20201360	~ 현재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2022. 03. 10.	4018431320000	㈜진모빌리	2032. 03. 10.			
M.i	서비스표	2021. 10. 27.	4020200159917	=	2031. 10. 27.			
	2022. 03. 10.	4018431330000	티	2032. 03. 1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아이엠택시(i.M Taxi)]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계약체결사실 없음

2. [아이엠택시(i.M Taxi)]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진모빌리티	아이엠택시	조창진	가맹사업 예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一一位エラリロ	(i.M Taxi)	이성욱	76NH M6	396, 2층 206호
㈜진모빌리티	아이엠택시	조창진	가맹사업 예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一一位エラリロ		76NH M6	테헤란로26길 14, 4층 101호	
㈜진모빌리티	아이엠택시	조창진	가맹사업 예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一一位エラリロ	(i.M Taxi)	이성욱	기 증시 H 에 증	테헤란로26길 14, 8층 101호
㈜진모빌리티	아이엠택시	조창진	가맹사업 예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위신도달디디 	(i.M Taxi)	이성욱	/ 경제법 메정 	507, 7층 109호
㈜진모빌리티	아이엠택시	조창진	가맹사업 예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17101111	(i.M Taxi)	이성욱	ମଟମାପ ଜୀଟ	41, 2층 201호(성수동1가)

3. [아이엠택시(i.M Taxi)]의 업종

영업표지	업	종
아이엠택시(i.M Taxi)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운송	택시서비스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아이엠택시(i.M Taxi)]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٨٦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0	0	0	0	0	0	0	0	0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최근 3년간 [아이엠택시(i.M Taxi)]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0	0	0	0	0
2022	0	0	0	0	0	0
2023	0	0	0	0	0	0

6. [아이엠택시(i.M Taxi)]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아이엠택시(i.M Taxi)]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어조	가맹점/직영점의 수		
一十正	경오/이금	경압표시	등록번호	업종	2021년	2022년	2023년
71.011 14 14	㈜진모빌리티/조창진	아이엠	00001000	0.4	7/0	10/0	1.4/0
가맹본부	이성욱	(i.M)	20201360	운송	7/0	12/0	14/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직전 사업연도(2023년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가맹점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평균	군매출액	연간평균매	출액(상한)	연간평균매	출액(하한)	
	수	연간 평균	면적	상한	면적	하한	면적	
		매출액	3.3㎡당	중 <u>단</u>	3.3㎡당	아인	3.3㎡당	
전체	0	-	_	-	_	-	-	_
서울	0	-	_	-	_	_	_	_
부산	0	_	_	_	_	_	_	_
대구	0	-	_	_	_	_	_	_
인천	0	-	-	-	-	-	-	-
광주	0	_	_	_	_	_	_	-
대전	0	-	_	_	-	_	-	-
울산	0	-	-	-	-	-	-	-
세종	0	-	-	-	_	_	-	-
경기	0	-	_	-	_	_	_	_
강원	0	-	_	_	_	_	_	_
충북	0	-	_	_	_	_	_	_
충남	0	-	_	_	-	_	-	_
전북	0	-	-	-	_	_	_	_
전남	0	-		-	_	_	_	_
경북	0	-			700	-	_	_
경남	0	-		- 1	N 4/1	_	_	_
제주	0	_	- 6	- 1		_	_	_

에 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 제 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아이엠택시(i.M Taxi)]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아이엠택시(i.M Taxi)]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 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日)
2023	0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 광고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_	_	1,705,292	1,705,292	0	_	
광고	비 공 개	비 공 개	1,705,292	1,705,292	0	-	

☞광고 및 판촉비를 가맹점 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의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9. 광고 및 판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가맹금 예치

☞해당사항 없음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 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아이엠택시(i.M Taxi)]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_				
가맹비	없음			-	
최초교육비	없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		1 - 1 - MC	-1-1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없음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				
가머비	었으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택시1대 기준)

없음

없음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가맹본부	37,000	-	협의	_	장비 사안에 따라 변동 가능
차량구입	개인 구매	31,000	-	_		차량 구입
차량개조	가맹본부	4,200	-	협의		LPG 개조 등
초도물품	가맹본부	1,300		협의	발주 전 계약 취소	유니폼 등
전용단말기 (기기)	가맹본부	500		협의	711 713	설치비 포함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은 신형 카니발 11인승 기준

최초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해당사항 없음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정부 및 지자체 기준을 따름	-성년을 원칙으로 함(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개인택시 기사(면허 보유) - 개인 중형택시 무사고 5년 이상 - 개인 모범・대형승용・고급택시 무사고 1년 이상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8) 당사는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등에 대하여 분납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มฉ
광고·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광고성격에 따라 다름	광고비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	광고 미시행	광고시행 후	V. 9. 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가맹본부	협의	협의	시공 전	시공 후	교체 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로열티	가맹본부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7.2%	매익월 5일	반환불가	실비	가맹점차량관리프 로그램, 가맹점 호출 플랫폼,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포함
콜센터운영비	가맹본부	가맹점 계약일 1년간 무상 이후 협의 진행	협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가맹사업 시작 단계로 정해지지 않음
전용단말기	가맹본부	협의	협의	반환불가	실비	

월사용료(모 뎀 통신비)						
통신비	이동통신 사	기맹사업자 지정상품 금액	통신사 지정일	가맹본부 귀책 해지 시	사용 후	통신사와 별도 협의
운행표준습득 교육	가맹본부	실비	교육실시 전	실시 전	실시 후	※기본교육 (드라이버1인당)
영업 중 교육	가맹본부	실비	교육실시 전	실시 전	실시 후	※정기교육※특별교육(드라이버1인당)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0%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금전 지급 기일 경과시

☞전용단말기 구매 할부금 및 통신비는 전용단말기 설치 후 계약기간 동안 매월 납입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별도로 해당 공급업체에 납부(제공업체, 월 납부금액 등 세부내용은 가맹본부가 별도고지)하여야 한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해당사항 없음	
구분(기준 : 2023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영업 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영업 현장을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영업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요청은 (서면, 이메일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별도로 납부 하여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 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협의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는 위약벌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양수 받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비품·집기 및 당사의 모든 영업비밀자료(매뉴얼 등)등 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 · 원상회복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철거 ·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 ·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는 철거 · 원상회복에 관한 확인서를 통하여 철거 · 원상회 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 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귀하가 [아이엠택시(i.M Taxi)]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강제합니다.

※권장물품은 당사가 지정한 제품 및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미리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해당사항 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아이엠택시(i.M Taxi)]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아이엠택시(i.M Taxi)]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 2) 당사는 [아이엠택시(i.M Taxi)]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 서비스	가맹서비스의 내용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대형승합택시	별도 관리된 차량(카니발) 및 교육받은 기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의 대형승합택시 서비스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음	1회위반:구두경고 2회위반:1차서면 시정요구 3회위반:2차서면 시정요구 4회위반: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타 가맹사업자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공급받은 모든 물품, 용역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1차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2차서면 시정요구 4회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가격 결정

☞기본 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지자체에 협의된 가격으로 진행되며,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플랫폼 사용에 따른 호출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시행을 하며, 만약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약관 변경 고지에 대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 당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8에 의거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 ☞ 당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8에 의거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 당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8에 의거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 당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8에 의거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시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련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랜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랜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 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미	배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0%	없음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 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	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제26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201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영업설비 및 집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법령 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하	제26조
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준 및 가맹본부가	제26조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	제26조
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동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 수준에서 가맹본부가 가맹	
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제26조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일이 월 20일, 월 160시간 이하인	제26조
경우	MIZUTE
○ 가맹점사업자가 제8조, 제17조를 준수하지 않아 가맹사업에 잦은 차질이	제26조
발생한 경우	MIZUSE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 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나 본 계약의 의무 조	TII O Z T
항 또는 특약 조항 위반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7조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나 회생절차가 개	시 제27조
된 경우	AILT II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27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	사 제27조

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	
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제27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7조
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	
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	제27조
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	74127 ==
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	
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제27조
연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	제27조
	제2/소
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	
우	제27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				
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 후 3개월 내 통지 시		가맹본부에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가맹비, 교육비 지급, 보증금 상계처리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 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 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신 청 → 당사 담당팀 검토→ 대리행사여부 통지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_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 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신 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업무위탁 여부 통지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전지역에서 귀하가 [아이엠택시(i.M Taxi)]과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가맹운수업 콜택시 및 택시서비스 업종 및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은 물론이고	문의:
이와 관련된 가맹사업(타사 가맹점 및	본 계약종료 및 해지, 해제 후 2년	가맹사업
가맹본부 경영) 등	동안 경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아이엠택시(i.M Taxi)]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월 160시간 이상	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가맹계약서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개인택시 본인 1인	직접근무	대체 가능 인력 없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아이엠택시(i.M Taxi)]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활	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의	과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서	[하 [[]	요은 다음과 같음	≓IJLŀ		

78	교고 AD	부담비율		보다 저귀	ш¬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브랜드 상품광고	전액 부담	없음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상품광고+가맹점모집 광고	전액 부담	없음	_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증정행사	전액 부담	없음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팜플렛 등 제작	전액 부담		_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당사의 영업비밀을 제3 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직원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당사의 시스템, 매뉴얼, 서비스, 판매, 영업, 서비스 영업, 플랫폼 관리, 계약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제3자가 인지할 경우에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법이나 노하우 및 이들이 수록된 운영교범 기타 자료를 포함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 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제26조1항의8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았을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1일 금일만원(₩10,000)씩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제11조(계약기간)를 지키지 않고 가맹본부와 합의 없이 운행을 중단하거나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해지 및 종료하거나, [아이엠택시(i.M Taxi)]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택시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본부가 지원한 영업설비 및 집기 등의 총액의 2배를 위약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18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위약벌로 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1일 금일만원(₩10,000원), 계약 종료 이후 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벌로 가맹본부에 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1일 금일만원(₩1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본부 및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벌로 가맹본부에 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1일 금삼만원(₩3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1일 금오십만원 (₩500.000원)씩 가맹본부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지급요청일에 가맹점사업자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한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점사업자는 연이율 10%의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을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용
합계		25일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14일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1일	IV. · 가맹점사업자의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1일	가행검사합자의 부담 참조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1일	
가맹금 예치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5일	
교육 실시	- 운영교육 실시	1일	
장비장착	- 통신장비 등 입고	당일	
오픈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 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으로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회계 등 가맹점 운영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제시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 업팀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부담	문의: 가맹사 업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 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	사항 없음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개점 전 신규교육 프로그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필			xi)]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최소시간	비용	มอ
개점	전 교육	2일	없음	최초 계약 시 이수/1인 기준 (습득능력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개점 후 교육	수시교육 특별교육 재교육	별도계획 별도계획 별도계획	실비 청구	별도통지 함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	_	_	-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_	_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_	-

[별첨 1]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8		
5		X MA	
6		IOIVI	
7			
8			
9			
10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tel:02-6925-629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 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 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 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확인서 -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수령확인서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일시	20 년 월 일 시 수령장소
	<i>"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았음을</i>
	<u>확인합니다."</u>
제공받은	[하단 자필기재요망]
사실	

상기 기재사항들은 전부 가맹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별첨: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10개 점포 가맹점사업자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 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맹 본 부: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자 : (인) 또는 서명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수령확인서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일시	20 년 월 일 시 수령장소
제공받은 사실	<u>"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았음을</u> <u>확인합니다."</u> [하단 자필기재요망]

상기 기재사항들은 전부 가맹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별첨: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10개 점포 가맹점사업자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 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맹 본 부: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자 : (인) 또는 서명